■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1.4.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이륜자동차번호
	신고사유 [ ] 용도폐지 [ ] 분실·멸실 [ ] 도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60 g/㎡)